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33662(본소), 2021나3367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여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웅(소송구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온 담당변호사 성민혁, 한윤기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20.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가소17581(본소), 2020가
소631789(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차용금 상환액 7,870,354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출자지분액 2,50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129,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4.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B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2015. 11. 2. 조합과 사이에 조합 출자금에 대한 재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 재대출 약정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조합 출자금 2,500만 원에 대하여 조합이 (재)D로부터 대출한 자금으로 가입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해 주는 대신, 조합원은 조합의 운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에서 재대출 원리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조합 탈퇴시 대출금 잔액을 중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 원고는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조합이 (재)D로부터 대출한 돈을 조합으로부터 차용하여 조합의 출자금으로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8. 4. 3. 조합을 탈퇴하였다.

- 원고는 재대출 약정에 따라 매달 462,962원 및 이자 4.6%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조합에 차용액 원금 중 7,870,354원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조합에 재대출 잔액 17,129,646원 및 이에 대한 연 4.9%의 약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 조합은 2021. 12. 30. 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38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에서 차용금 상환액 7,870,354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출자 지분액 2,50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등 참조).

B협동조합이 2021. 12. 30. 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387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지 않은 채 본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을 소송수계한 피고에게 17,129,6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2018. 4.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약정이자 연 4.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이영훈, 판사 조미옥